

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263호

「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저출산 대책('23.3.28)에 따라 세대원 수에 맞는 적정 면적기준으로 공급할 예정('24.3.25~)으로, 거주중 세대원수의 변동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되는 가구가 되거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임대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공급면적 초과 가구에 대한 임대료 할증 기준 마련(안 제9조제1항)  
거주중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면적 기준 초과 시 임차인이 계속 거주

하고자 하는 경우 초과된 면적기준으로 임대료 할증비율 적용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공공주택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
- 팩스 : 044-201-5663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공공

주택정책과(044-201-4580, 044-201-45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